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9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  
(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5의2,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6조, 제48조, 별표 26,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별지 제41호의2, 별지 제41호의4, 별지 제49호, 별지 제60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8호)

식품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하여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blue10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신고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고,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등록신청서”를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중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를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9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를 “식품접객업자(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가 조리사면허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5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7호자목 중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을 “조리사면허증”으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의 제1호 표의 제4호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엔테로 박터 사카자키균”을 “크로노박터균”으로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3cm×4cm”를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중 “40mm”를 “45mm”로 하고, 같은 앞면 중 “74mm”를 “79mm”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중 “64mm”를 “69mm”로 하고, 같은 뒷면 중 “74mm”를 “79mm”로 하며, 같은 서식 주 1) 제1항 중 “(49mm×40mm)”를 “(35mm×45mm)”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200원	28,000원

별지 제35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000원	5,300원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삭제 <2019. 11. 2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자민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방문·우편민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td> </tr> </tbody> </table>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자민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방문·우편민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5,2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00원</td> </tr> </tbody> </table>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200원	28,000원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200원	28,000원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p> <p>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5 813 1123 1122" rowspan="4"> <p>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p> </td> <td colspan="2" data-bbox="1123 813 1487 875"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td> </tr> <tr> <td data-bbox="1123 875 1302 898" style="text-align: center;">전자민원</td> <td data-bbox="1302 875 1487 898" style="text-align: center;">방문·우편민원</td> </tr> <tr> <td data-bbox="1123 898 1302 949">소재지 변경: 23,800원</td> <td data-bbox="1302 898 1487 949">소재지 변경: 26,500원</td> </tr> <tr> <td data-bbox="1123 949 1302 1010">소재지 외 변경: 8,300원</td> <td data-bbox="1302 949 1487 1010">소재지 외 변경: 9,300원</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123 1010 1487 1122">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td> </tr> </table>	<p>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5 1727 1086 1948" rowspan="3"> <p>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td> <td colspan="2" data-bbox="1086 1727 1487 1765"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data-bbox="1086 1765 1302 1800" style="text-align: center;">전자민원</td> <td data-bbox="1302 1765 1487 1800" style="text-align: center;">방문·우편민원</td> </tr> <tr> <td data-bbox="1086 1800 1302 1836" style="text-align: center;">8,300원</td> <td data-bbox="1302 1800 1487 1836" style="text-align: center;">9,300원</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086 1836 1487 1948">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td> </tr> </table>	<p>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8,300원	9,300원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8,300원	9,300원									
<p>「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별지 제60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2. 재발금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잃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전자민원 발급: 4,900원 재발급: 2,700원	방문·우편민원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별지 제62호서식 중 “(3cm×4cm)”를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면허증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전자민원 800원	방문·우편민원 890원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제97조 관련)

구분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5,200원	28,000원
나.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원	26,5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3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
다. 조건부영업허가	25,200원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다만,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5,200원	28,000원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2,000원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만,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라 한

		다)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 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 원료 중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 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2) 식품 원료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100,000원
3)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4,900원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2,700원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개명 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00원	890원
4.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5.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 처 및 그 소속기 관 시험·검사의 뢰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 수수료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li> <li>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1.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 [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li> <li>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li> <li>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25,200원	28,000원

처 리 절 차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대상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m <sup>2</sup> ] 건물 외부 장소 [ m <sup>2</sup> ]	건물 내부 장소 [ m <sup>2</sup> ] 건물 외부 장소 [ m <sup>2</sup> ]		
시설 등				

### 변경 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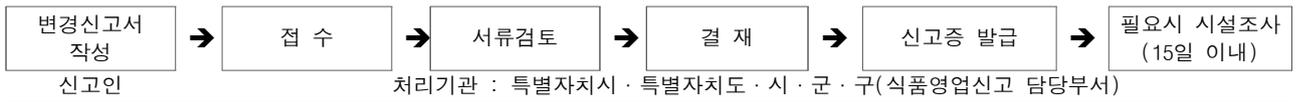
### 유의 사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p>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p> <p>가. 영업신고증 1부</p> <p>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p> <p>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카.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p> <p>3.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4. 그 밖의 변경의 경우</p> <p>가. 영업신고증 1부</p> <p>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자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방문·우편민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변경: 23,8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변경: 26,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외 변경: 8,3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재지 외 변경: 9,300원</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td> </tr> </table> <p>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소재지 변경: 23,800원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8,3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p>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p> <p>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b>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b>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营业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	---	--

**처 리 절 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u>신청·신고서</u>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삭 제</p> <p>2. 3.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전기사업법</u>」 제66조의2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p>	<p>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 ----- ----- ----- <u>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u>----- --- <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전기안전관리법</u>」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p>



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 1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 7. (생략)

-----  
-----  
-----  
----- 특수용도형 -----  
-----  
-----  
-----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  
-----  
-----

15. ~ 17.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  
-----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⑪ (생략)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 -----  
-----  
-----  
-----  
-----  
-----  
-----.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  
-----  
-----  
-----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

1. -----  
-----  
-----  
----- 제17호 -----

2. 3. (현행과 같음)

② -----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

---  
---  
---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

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

-----  
-----  
----- 해당하며, 전자문  
서를 포함한다)-----  
-----  
-----  
-----

1. ~ 3. (현행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  
----- 신고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  
-----

1. -----  
----- 영·유아용 이유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 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2. 3. (생략)

② (생략)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생략)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  
-----  
-----  
-----  
--.

<삭제>

2. (현행과 같음)

3. -----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가 조리사면허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

1. -----  
----- 따른 -----  
-----  
-----  
-----

2. (현행과 같음)